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
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직자였던 자가 자기 직무였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(예정)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구체화하고, 공직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(안 제74조제4항)

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,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

나.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(안 제78조)

부패행위의 감사·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

도 그 감사·수사·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
하지 아니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8조 중 “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”을 “공직자(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)가 감사·수사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 신고에 대한 구조금 지급 결정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구조금의 산정 기준) ① ~ ③ (생 략) <u>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 한다.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보상금”은 “구조 금”으로, 제78조 중 “보상금”은 “구조금”으로 본다.</u>	제74조(구조금의 산정 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제78조(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 한) 부패행위의 감사·수사 또 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<u>공직자가 자기의 직 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 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	제78조(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 한) ----- ----- ----- <u>공직자(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)가 감사·수사 또는 조사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7752